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이사	응모번호	※ 기재 불요
--------	----------------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인 적 사 향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 소						
		본적지						
		전 화	[주택]() -	[직장]() -	휴 대 전		E-mail	

학 력 사 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이 학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 포상실적

□ 경력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관련분야 논문발표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학 문			
기 타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업무연관성 높은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항 목	해당여부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여 □ 부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제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 □ 부 □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기관장이 법원에서 정권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권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기관장과의 계약 등) ⑦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④ 제정경재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권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직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권의·요구할 수 있다.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다만, 공기업의 의결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권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 □ 부 □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② 제정경재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과 감사 또는 임명위원회의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권할 수 있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④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정 경재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조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직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경재부장관 또는 직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권할 수 있다.
⑤ 제정경재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권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③ 제정경재부장관 또는 직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 기관 원인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권의·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원인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권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인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비상임이사직에 지원함에 있어,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같이 고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있음	해당없음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법률·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본인은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해 응모가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지 원 자 : (서명)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3매** 내외)

지 원 자 : (서명)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회사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사업 계획,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3매 내외)

지 원 자 : (서명)

※ 작성 시 참고사항

비상임이사 선임과 관련된 주요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동 사항을 참고하시어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기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① 기업 경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

- 기업 경영 경험
- 경영혁신계획 수립 경험 또는 역량
- 경영 관련 대안 제시 능력
- 중장기 전략 수립 능력

②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건전한 윤리의식

- 건전한 윤리의식
- 책임감·준법성 등을 바탕으로 한 솔선수범 자세
-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③ 공사 비상임이사 업무수행과 관련되는 역량

- 객관적 정책 제시 능력
- 무역보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
- 정부 정책방향, 수출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담당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이 원활한 인사검증의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관리, 보유기간, 유의사항 등

-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하가 지원한 임원 직위예의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해당 선임기간(원서제출일~인사발령일)까지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됩니다.
- ☐ 인사검증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집·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검증을 시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으로서의 임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담당 부서장 귀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	(자필서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예 ☐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	☐ 예 ☐ 아니오	
3. 민감정보(범죄경력 등) 처리 동의	☐ 예 ☐ 아니오	
4. 개인정보의 제3자(개인정보 보유 기관) 제공 동의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 병적자료	· 재산등록자료	· 인사혁신처 등 각 관할기관
· 범죄경력 등 자료	·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	· 국민연금공단
· 행정안전부, 지자체, 법원	· 출입국 및 국적자료	· 법무부
· 감사 및 징계진척자료	· 정치자금기부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부동산 자료	· 생소속직불금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법원	· 각종 인·허가 자료	· 해당 인·허가 관청
· 소득 및 납세자료		